

제 22 장 협정의 운영

제 22.1 조 공동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페루의 통상관광부장관 또는 그들 각각의 승계자 또는 그들 각각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.

2. 공동위원회는

- 가.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을 감독한다.
- 나. 이 협정의 적용을 통해 달성된 사항을 평가한다.
- 다. 이 협정의 추가적인 정교화를 감독한다.
- 라. 제23장(분쟁해결)에 따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- 마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관의 작업을 감독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다.
- 바. 자신의 규칙 및 절차를 수립한다.
- 사. 패널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의 금액을 설정한다.
- 아. 패널위원의 행동규범을 준비하고 승인한다. 그리고
- 자.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는 양 당사국에 의해 위임된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.

3. 공동위원회는

- 가.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관을 설치하고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.
- 나. 각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,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개정 또는 수정을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다.
- 다.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자유화를 추가적으로 심화

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회합할 수 있다.

라.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.

마.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부속서 23가(모범절차규칙)에 언급된 모범절차규칙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. 또는

바.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4.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.

5. 공동위원회는 정규회의로서 최소 1년에 1회,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회의로 회합한다. 회의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기술적 수단에 의해 개최된다.

제 22.2 조

협정조정자 - 접촉 부서

1. 각 당사국은 협정조정자를 지정하고 이 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지정을 통지한다.

2.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, 각 당사국의 협정조정자는 이러한 취지의 접촉 부서 역할을 수행한다.

3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모든 정보, 요청 또는 통지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접촉 부서를 통해 통지된다.

4. 협정조정자는

가. 공동위원회 회의의 의제 개발 및 그 밖의 준비를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고, 적절하게 공동위원회 결정의 후속조치를 취한다.

나. 공동위원회가 위임한 그 밖의 사안을 다룬다. 그리고

다. 제23장(분쟁해결)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.

5. 각 당사국은 자국이 지정한 협정조정자의 운영 및 비용을 책임진다.